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49회 제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1. 6. 10.(목)

검 토 안 건	발 의
“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”	구청장



복지도시위원회
(전문위원 조광현)

검 토 보 고 서

(보고자 : 전문위원 조광현)

1. 검토안건

- 안건명 : 마포복지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

2. 제출경위

- 제출자 : 마포구청장
- 제출일 : 2021. 5. 21.
- 회부일 : 2021. 5. 24. (의안번호 : 21-59)

3. 제출이유

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한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가. 출연대상 : 마포복지재단

나. 관련근거

- 1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(재정지원)
- 2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(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)

다. 출연 필요성

- 1) 마포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보통재산 출연 지원
- 2) 지역자원 총량 확대를 위한 모금·배분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

라. 출연금액 및 내용

- 출연금액 : 2,106,235천원
- 출연내용 : 재단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) 지원
 - 기본재산 : 2,000,000천원
 - 보통재산 : 106,235천원
 - 인건비 51,651천원, 운영비 38,084천원, 사업비 16,500천원

【 출연금 내역 】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세 부 내 용	비고
합계	2,106,235		
복지재단 기본재산	2,000,000	· 기본재산 적립	
복지재단 운영	106,235		
인건비	51,651	· 기본급여, 제수당 등	
운영비	38,084	· 사회보험료, 급식비, 수도광열비, 도서인쇄비, 회의운영비, 소모품비, 자산취득비 등	
사업비	16,500	· 복지재단 홍보 및 나눔활성화 사업, 네트워크 구축 사업	

※ 출연동의안 구의회 의결 후, 2021년도 사업예산(안) 심의·결정

바. 추진경과 및 계획

- '20. 2. 21.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
- '20. 3. 11.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시행
- '20. 7. 3. 마포구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- '20. 9. 3. 서울시 2차 협의 완료
- '21. 3. 2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공포
- '21. 5. 21. 마포구의회 출연동의안 제출
- '21. 5. 21. 2021년도 사업예산안 제출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2)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
(재정지원)
- 3)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
(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)

6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규정과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재정지원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설립예정인 마포복지재단 기본재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.

○ 마포복지재단 추진경위

- '20. 2. 21.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
- '20. 9. 3. 서울시 2차 협의 완료
- '21. 3. 25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공포

○ 재단 출연금액 및 내용

출연금액은 2,106,235천원으로 출연내용은 재단 기본재산 20억과 향후 3년간 매년 10억씩 30억 총 5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, 보통재산은 106,235천원으로 이는 인건비 51,651천원, 운영비 38,084천원, 사업비 16,5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.

○ 검토의견

마포복지재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작년 10월 제 244회 임시회의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이후 어렵게 조례안이 통과 된 바 있습니다.

집행부에서는 당시 구의회에서 재단 설립 시 우려하였던 사항과 집행부에서 요구하였던 재단설립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 구민에게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참고자료 1. 마포복지재단 설립 개요
2. 관계법령

【붙임1】 설립개요

마 포 복 지 재 단 설 립 개 요

- 명 칭 : 마포복지재단
- 설립형태 : 자치구 출연기관, 비영리 재단법인, 공익법인
- 설립주체 : 마포구
- 설립예정일 : 2021년 11월
- 기본재산출연 : 50억원
 - '21년 20억 출연, 이후 매년 10억씩 3년간 출연 예정
 - ※ 시 설립허가 기본재산 최저기준 : 20억원
- 운영재원 : 구 출연금, 이자수입, 후원금, 기타
 - 인건비, 운영비 및 사업비(구출연금)
- 조직 및 인력
 - 조 직 : 이사회, 감사, 사무국
 - 임 원 : 이사 15명 이내, 감사 2명
 - 직 원 : 2개팀 7명
- 주요사업 (우선순위)
 -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(모금·배분)
 -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 사업
 - 지역복지 역량 강화 및 복지공동체 강화
 - 사회복지시설 운영 · 관리
 - 지역복지 조사·연구 정책개발

【붙임2】 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지원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

□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그 밖의 수입금

②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1. 구의 출연금
2. 기본재산 운용 및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3. 법인·단체, 개인의 기부금품
4. 그 밖의 수입금

□ 지방재정법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